신설학교 설립 관련 행정절차 및 관계 법령의 이해

내용 [시행주체] \ 일정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담당부서/담당자
1. 도시 및 택지개발(주택건설) 개발사업 계획 제안 [개발사업시행자→지자체장]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개발사업 유형별 토지이용 및 건축, 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① 개발계획: ⑦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실시계획인가) - ② 정비계획: ⑦ 정비사업(도시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⑧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계획법 - 실시계획인가) ⑨ 토지형질변경(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⑩건축(건축법 - 건축허가)	2. 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통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을 통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① 주민(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지구단위, 도시개발 등) 제안(주민→지자체장) ② 지자체장은 주민이 제안한 개발계획에 대해 제안 타당성 검토 및 유관기관(교육장, 경찰서장) 협의(사전적 성격), 필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③ 주민 제안 개발계획 수용(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 통보(지자체장→주민) ④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유관기관(교육장, 경찰서장) 본 협의(지자체장은 필히, 유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⑥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계획구역지정 등) 고시 (이후) ~ ⑦개발계획구역 내 주거용지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주민→지자체장) ⑧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지자체장→교육장, 경찰서장) ⑨ 학생배치방안 검토 후 해당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행정청(교육지원청) 학생배치의견 회신(교육지원청→지자체장)	지자체 도시계획과 또는 도시사업과
2.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계획 반영) 관련 유관기관 협의 [지자체장→교육장]	유관기관 협의	- 도시개발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의 지정 등) 변경 단계에서의 학생배치계획 검토함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에 의해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학교의 설립 검토에 수반되는 학교용지의 확보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감의 주관하에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함(행정기관 간 협의는 '동의'또는 '합의'를 의미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입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2-10. ② 도시개발구역지정 입안 : 도시개발업무지침 2-8-11-4. ③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④비구역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4-11-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에 의거해 수립한 학생배치계획에 부합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학교신설, 인근 학교 배치 또는 증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학생배치 가능 여부에 대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동의를 구하는 정차임				
3. 학생배치 검토(기존 학교배치 또는 신설학교 설립계획수립 여부 검토) [교육장 검토]	학교설립 계획 검토	1. 학생배치계획: 조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52조(학생배치계획)	③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기정 협의 이력 여부 확인 및 재검토 ② 기정 협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대외 견해표명(對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있었는지 여부 확인 - 기정 협의 이후 학생배치계획의 검토 시기 변경 및 행정행위 가변요인(세대수 증감 등) 발생 사유로 재검토 협의 요청 시점에서 재검토 가능함				기획경영과
4. 학교용지 입지 분석 제안 및 검토 [제안:개발사업시행자, 검토:교육장]	용지 선정 및 기반시설 협의	1. 입지 적정성: 학교용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 공급), 교육환경보호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2. 대지 적정성: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88조~제90조		□ 교육환경평가 시기 ③ 도시개발, 지구단위 등 모든 개발사업은 반드시 지구 지정(개발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확정) 전까지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하여야 함(교육부 2012민원질의회신 사례집 197페이지 참조) □ 학교용지 및 교사시설 증축 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상 유의사항 ① 민영개발사업자와 학생배치 방안 협의 시, 공문 형식의 서면을 접수하지 말 것(학생배치방안 수립 및 조치계획 보완 형식으로 지자체를 경유하여 접수 할 것) ②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민영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기부채납'이라는 단정적 표현(언사 또는 문언) 지양 - 기부채납은 기본적으로 자의(반대급부x)에 의하여 이뤄지는 행정절차로써,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에 따라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는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한정됨. 개발사업 협의시 워딩 예시) 개발사업에 따라 밀집하는 학령인구의 적정배치를 위해 '학교설립'이라는 공익적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사업자의 동참을 요청하였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자의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온 것 뿐임 / 자진이행확약서 형식의 서면 징구 필요성 설명(협약서x)	① 주택법 제19조(다른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지자체 장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안됨 ②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라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는 '개발사업 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기획경영과, 개발사업 시행자
5. 교육환경평가 작성 [작성:개발사업시행자(용역사대행)검토:교육환경보호원/교육지원청 경유)]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교육환경보호원 검토/보완	1. 교육환경보호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2.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개발사업 시행자
6. 교육환경평가 심의.승인 [제안:개발사업시행자(용역사대행,승인:교육감(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경유)]	심의 (승인)	1. 심의: 교육환경보호법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2. 승인: 교육환경보호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개발사업 시행자
7.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상정:교육장, 심의:학교설립계획 심의 위원회]	학교신설 심의 자문	1. 학교설립계획 심의자문: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4조(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2.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11항에 따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함.					
8.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회 신 / 승 인 고 시 [승인,고시 주체: 지자체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 고시	1.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주민(개발사업자)이 개발계획기을 포함한 지구단위 또는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입안 제안 - 이때 지자체는 유관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에 사전협의 형식으로 주민 제안에 대한 기관의견을 수렴함(사전협의 형식임을 주의할 것) - 유관기관 협의 후 국토계획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시장이 수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줘야함 2. 국토계획법 제27조~제28조에 따라 해당 주민제안에 대한 기초 조사(유관기관 사전 협의 포함) 및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협의(지자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또는 합의를 구해야 함)를 완료하면, 국토계획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검토 [신청:개발사업시행자, 검토:지자체장,교육장]	승인	①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 기존에 협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시, 교육지원청의 견해로 제시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② 학교용지 입주 주요 검토사항(교육환경평가 기준 항목 이외의 사항) - 학교용지 입지 계획 시, 기초생활권 중심부 확보 - 적정규모 학교용지 면적 확보(세종시 기준 참고) - 공원 및 녹지의 학교용지 인접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개발사업 시행자
10.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및 승인 [신청:개발사업시행자, 승인:지자체장(교육장 등의 절차 이행)]	승인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시행자는 착공확인(필증 교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여야 입주자 모집 공고 가능 / 수분양권자 발생(민원 서막의 장이 시작됨) ② 학생배치 방안 협약서 체결 후 분양공고 승인 통의			개발사업 시행자
11. 투자심사 (도교육청) [의회:지역교육지원청, 심사: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장]	심사 (승인)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2.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숙지(재정법령 상 사전절차 이행 - 교육환경평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기획경영과
12. 투자심사 (교육부) [의회:교육감, 심사:중앙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심사 (승인)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2.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기획경영과
1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계약 및 제반도서 작성 [작성.의회 및 비용부담 주체:학교용지법 적용 시, 개발사업시행자(학특법은 교육지원청)]	학교용지 소유 이전 또는 동의서 징구	토지이용계획, 교통영향평가 검토 등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계획 입안의 제안),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 2(도시.군관계획 입안의 제안) - 주민제안(제26조)은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4 이상 토지주 동의 필요	① 학생배치 방안 협의(학교용지 확보, 교사 증축): 개발사업시행자↔기획경영과 / 학교용지법 제3조 (학교용지의소성개발),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 방안 협의 - 학교용지 또는 시설 증축 확보 협약서 체결 - 개교 및 배치 시기 검토 ②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착공/준공): 개발사업시행자↔교육시설과 /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 (시행계획의 승인) 제5조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2조(감독등)제13조(준공검사 등)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설계 및 재원 검토) - 토목·건축공사 착공/감독 - 사용승인 및 준공 확인 ③ 기부채납 절차 이행(소유권 이전, 공부 등록): 개발사업시행자↔재무관리과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제9조(공부등록 등),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서(관련 서류) 접수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소유권 이전	개발사업시행자
14.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 [의회:개발사업시행자, 접수:지자체장, 협의:지자체장↔교육장]	지자체 각 부서, 경찰서 등 협의	1.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 ②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3-2)					개발사업 시행자
15.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입안자:지자체장]	접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1. (개발사업자 외) 학교용지 소유자가 시행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병행처리 가능 2. (개발사업자 외) 학교용지 소유자가 시행사가 아닌 경우, 행정절차 병행처리 불가 3. (개발사업자 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승인 고시를 통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제 처리 가능				개발사업 시행자
16.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고.열람:지자체장]	공고 14일	1.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개발사업 시행자
17.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안:지자체장, 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심의	1. 국토계획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국토계획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 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발사업 시행자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고시:지자체장]	준공 공사 착공	1. 국토계획법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①항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제1호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국토계획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개발사업 시행자
19. 용지현황 및 경계측량 [의뢰: 개발사업시행자, 시행:한국토지정보공사]	각종 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도시계획시설 구역계 확정을 위한 경계측량(건축 및 담장 설치, 인접토지 경계 확인), 토지의 분할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				③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함. ② 행정기관 간(교육지원청↔지자체)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단순히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 장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함(법제처 유권해석 16-0120, 2016. 6.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사업 시행자
2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고시 [신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지자체장]	시행자 지정 및 고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학교용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자 지정 가능					개발사업 시행자
2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신청: 개발사업시행자, 인가 및 고시: 지자체장]	★학교용지 성사업 인가	도시계획시설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지자체에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수용 또는 사용 토지 상세내역 등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국토계획법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인가하여야 함(소관 문화경영행정기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허가 포함) /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용지 부지조성 공사 시 우·오수, 상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관련 간선시설을 학교로 들어오는 각 시설의 분기점에 인입 설치를 요하는 부분 부여(시설과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재정 투입 시 감사 지적 대상) / 이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하는 필히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야함. 이때 교육시설과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용지 관련 규제, 조성 사항을 명시하여 하여 '학교부지 조성 관련 학생배치 의견' 형식으로 조건부 동의로 송신하여야 함				개발사업 시행자
22. 학교용지 수용재결 [신청: 개발사업시행자, 승인:관할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학교용지 협의매수 결렬 시, 실시계획 인가 후 수용재결신청(6개월 소요)	공익사업법 제4조(공익사업), 제20조(사업인정), 제28조(재결의 신청), 제62조(사전보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국토계획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공익사업법의 준용) /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토지수용재결 권한 발생(용지 1/3에 대한 수용 가능)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유관기관 협의 시, 발생하는 행정과오 예시 사례1) 교육청 교육시설과 내 협의절차 누락으로 공문을 접수한 토목팀의 상하수도 분야 의견만 제시되는 경우 사례2) 간선시설의 학교용지 경계 인입 비용 중 일부를 교육행정으로 집행하는 경우(학교용지 조성공사 시공 중에) 사례3) 간선시설의 학교용지 경계 인입 공사를 교사신축 공사 공정에 녹여서 집행하는 경우(학교용지 조성공사 준공 후에)	개발사업 시행자
23. 도시계획시설 착공, 준공검사 [신청: 개발사업시행자, 착공, 준공검사: 지자체장]		학교용지의 토지주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한할, 교육청 주관의 행정절차 선행 불가 구간	학교용지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국토계획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			개발사업 시행자
24. 감정가 매입 [공급: 개발사업시행자, 매입: 교육장]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 이 영에 의한 기준[제3조(교사), 제4조(교사용대지), 제5조(체육장), 제6조 (교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11. 초등학교는 ~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단, 학교의 신설 시의 규정으로만 검토) 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학교지원과-5898(2018.3.13.)호 「기부채납 학교시설 적정 증축규모 권고 기준 알림」 참고			학교용지 매입	① 학교용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공급가 산정 ②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재무관리과, 개발사업 시행자
25. 공공건축 사전검토 [요청: 교육장, 검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비 1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 사전검토 등)	사용검사 및 입주		※ 학교용지 내로 간선시설 설치 비용부담 주체가 개발사업시행자인 이유(교육재정이 투입되면 감사 지적이 우려되는 이유) -근거1) 실정법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근거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되나,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시설물이 아닌 점 -근거3)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의 시행자는 조성공급한 학교부지를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보상받아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원도지 매입비, 부지조성비 등에 대한 보전이 이뤄지는 점 -근거4) 주택법 제28조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는 일정 규모 100세대 이상 또는 16,500㎡(주이상의 대조조성사업)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 -근거5) 주택법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과 관련된 시설의 규정 상 '학교'는 해당되지 못하여,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이 불가한 점	교육시설과, 개발사업 시행자, 수분양권자
26. 설계를 위한건축기획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지역교육지원청→도교육청]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11. 초등학교는 ~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단, 학교의 신설 시의 규정으로만 검토)	기획: 5천↑ 일상: 2억↑ 계약: 7천↑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2. 일상감사 지침 제8조,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교육시설과
27.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시행: 도교육청]		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교사신축 공사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인증 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학교시설 지역별 균형발전 추진계획(시설과-4132/13.04.30.),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16,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의3, 제12조 등			교육시설과
28. 공사를 위한 시행계획협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지역교육지원청→도교육청]			지자체 시행계획 협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 등),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교육시설과
29. 신설학교 건축공사 업체 선정 [지역교육지원청→조달청]		★학교지원과-5898(2018.3.13.)호 「기부채납 학교시설 적정 증축규모 권고 기준 알림」 참고	교사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재무관리과
30. 신 증 축 공 사 [지역교육지원청↔시공사]			준공 공사 준공	협의매수 완료 시, 절차 단축 가능	교사신축공사 개교		교육시설과